



제343회 임시회
2015.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3일

-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이 종료(2015.12.31.)됨에 따른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나. 추진 계획

- 수탁기간 : 2016.1.1. ~ 2018.12.31.(3년간)
- 수탁기관 : 정신보건시설,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 ※ 現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13.5.15~' 15.12.31)
- 수탁방법 : 공모 선정 또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협약
 - ※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 생략 가능(보건복지부 지침)
- 위탁주요사무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본 업무
 -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 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연계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위·수탁 협약 종료 (2015.12.31.)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거 도의회의 위탁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함.
-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충북도에서 설치 및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 사무의 시대적 필요성 및 분야의 전문성에 비추어,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지역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기관·단체)

시·도지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 다만,

- 충북의 노인자살률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평균 노인자살률에 비해 10%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 4번째 순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과,
- 충북의 청소년 자살률 또한 2010년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순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점,
-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변위협 등 안전문제 및 소진(burn out)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충북의 자살예방위기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바,
- 현 수탁기관(충북대학교 병원)이 재 운영 의사가 있을 시, 3년간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통해 재협약이 검토되어야 하며,
- 재공모를 할 경우에도 위탁 결정에 있어 사업 역량에 대한 검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위기관리사업 내용

○ 위기관리

- ▶ 1577-0199 자살 및 위기상담 전화 운영
- ▶ 사례관리 운영체계 조정 및 지원
- ▶ 자살시(의)도자 사후관리체계 운영
- ▶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 유가족 지원

- ▶ 자살유가족 모임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살예방 기획행사

- ▶ 자살예방 캠페인
- ▶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

○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예방 전문상담사(gate-keeper) 양성교육

□ 전국 및 충북 고령자 연령대별 자살률 현황(2013)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 증가

(인구10만명당)

연령대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전국	계	42.2	59.5	77.7	83.6	102.3	134.5
	남	67.0	96.5	133.0	143.6	207.5	251.3
	여	20.0	30.4	42.0	55.3	64.2	102.0
충북	계	62.0	62.3	94.6	110.4	111.7	161.5
	남	103.6	107.6	179.5	158.0	305.5	453.1
	여	24.7	27.6	40.4	88.7	35.8	77.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 추진 계획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추진계획(안)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자살예방사업 등 도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15.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재협약 추진계획(안)임

1 관련 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위탁대상 사무 및 도의회 동의 규정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 기 민간위탁사무도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도의회 동의 조치

2 現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현황

- 수탁기간 : 2013. 5. 15 ~ 2015. 12. 31
- 수탁기관 : 충북대학교 병원(원장 : 조명찬)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보덕빌딩2층)
- 운 영 비 : 년768,800천원(국비50:도비50)
- 위탁사무
 - 정신보건관련 자원과약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등
- 정신보건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 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연계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등

3 수탁기관 추진 일정

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0월 중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방침 수립 : 10월 중

- 위탁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있는 경우 : 재협약 검토
 - ※ 1회에 한하여 공모없이 재계약 가능(보건복지부 지침)
 -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 공개모집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추진 : 11월중

- 구성인원 : 6~9명정도(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2명,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

- 기 타 : 정신보건심의원,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 등 위촉

④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1월 중

4 행정 사항

- 위·수탁 협약 후 선정 된 수탁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관계 법령 발췌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5 정신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p45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 (설치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 (설치기준) 광역 시·도별 1개소
- (운영형태 中 위탁형)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지역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기관·단체)에 근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 p51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 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탁계약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함.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 p68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주요사업

-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 1577-0199 정신건강핫라인 운영에 대한 연구 기획, 프로그램개발, 교육, 네트워킹 등